# 제266회(정례회) 제 3 차본회의 <br> 2007년 12월 21일 (금) 

## 심 사 보 고 서

## $\square$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> 충 청 북 도 의 회
> 행정자치위원회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. 12. 21. 

행정자치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8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 정 및 의결일자
O 제264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10. 19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•토론, 심사보류

O 제 266 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
12. 14)상정, 질의 - 토론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)

## 1. 제안이유

○ 건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조문 삭제 및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인용조문 변경
(제 23 조 제 1 항, 제 25 조제 2 항, 제 3 항)
나. 건축법의 『재해관리구역』삭제로 인한 관련조문 삭제 (제4장)

다. 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업숭인 시 건축허가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(제35조)

마.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제8조, 제22조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가.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관련 조항 삭제, 법률 인용조문 변경, 주택법 제 16 조와 제 17 조 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조항 신설,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.

나. 상위법령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조문 변경 등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

다. 다만,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와 관련하여, 조항의 신설사유 와 근거, 그리고 시•군의 조례로 정한 건축수수료를 충청북도 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## V. 토론요지 : "생략"

## VI. 수정안 요지

## 1. 수정이유

가.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(안 제35조)은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수수 료 부과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주택법 등 상위법령 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며,

나.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수정주요내용

가. 안 제 35 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를 전면 수정함.

1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에 누락된 건축법의 근거규정을 삽입함.
2)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함.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VI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\% 붙임 :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.

## 충청북도 건축조레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안

> 제안연월일 : 2007. 12. 14. 제 안 자 : 조영재의원 외

## 수정이유

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(안 제35조)은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수수료 부과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며,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수정주요내용

1. 안 제 35 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를 전면 수정함.

가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에 누락된 건축법의 근거규정을 삽입함.

나.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함.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．

안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．
제35조（건축허가 등의 수수료）「주택법」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 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（변경을 포함한다）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「건축법」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．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．
（별표1）
건축허가 등 수수료(제35조 관련)

| 연면적의 합계 | 수 수 료 |
| :--- | :--- |
| 3 만 $\mathrm{m}^{2}$ 이상 10 만 $\mathrm{m}^{2}$ 미만 | 40 만원 |
| 10 만 $\mathrm{m}^{2}$ 이상 30 만 $\mathrm{m}^{2}$ 미만 | 80 만원 |
| 30 만 $\mathrm{m}^{2}$ 이상 | 160 만원 |
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．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<br> 번 호 | 152 |
| :--- | :--- |

제출연월일 : 2007년 10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이유

○ 건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조문 삭제 및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인용조문 변경 (제 23 조 제 1 항, 제 25 조제 2 항, 제 3 항)

나. 건축법의 『재해관리구역』삭제로 인한 관련조문 삭제 (제4장)

다. 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건축허가수수료 납부근 거 마련(제35조)

마.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제8조, 제22조)

## 3.의안전문:따로붙임

4.신 - 구문대조표:따로붙임
5.관계법령발췌:따로붙임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

제8조제2항중＂건축문화과장＂을＂건축팀장＂으로 하고＂건축문화 과＂를＂건축팀＂으로 한다．

제22조제2항중＂주택과장＂을＂건축팀장＂으로 하고，＂주택과 소속 의＂를 삭제한다．

제 23 조제 1 항중＂제 76 조의3 제 3 항＂을＂제 76 조의 6 제 1 항＂으로 한다．

제 25 조제 2 항중＂제 76 조의 7 ＂을＂제 76 조의 $16 "$ 으로 하며，같은 항 제 2 호중＂소용＂을＂소요＂로 하고，같은 조 제3항중＂제 76 조의 7 ＂을 ＂제 76 조의 16 ＂으로 하며，＂제 76 조의 5 ＂를＂제 76 조의 10 ＂으로，＂제 76 조의 6 ＂을＂제 76 조의 7 ＂로 한다．

제4장을 삭제하고，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．

제35조（건축허가 등의 수수료）「주택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（변경을 포함한다）승인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．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．
(별표1)
건축허가 등 수수료(제35조 관련)

| 연면적의 합계 | 수 수 료 |
| :--- | :--- |
| 3 만 $\mathrm{m}^{2}$ 이상 10 만 $\mathrm{m}^{2}$ 미만 | 40만원 |
| 10 만 $\mathrm{m}^{2}$ 이상 30 만 $\mathrm{m}^{2}$ 미만 | 80만원 |
| 30 만 $\mathrm{m}^{2}$ 이상 | 160 만원 |
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
## 신 -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
| :---: | :---: |
| 제8조(간사 및 서기) (1)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. <br> (2)간사는 건축문화과장이 되고,서 기는 건축문화과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 <br> 제22조(간사 및 서기) (1)조정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. <br> (2)간사는 도 주택과장이 되고, 서 기는 주택과 소속의 건축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이 된다. <br> 제 23 조(조정의 신청 및 회의) (1)조 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의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br> (2)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는 참여할수 없다. <br> (3)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(이하 "당사자"라 한다 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 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 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. (4)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99. 7. 30) | 제8조(간사 및 서기) (1) (현행과 같음) <br> (2) $\qquad$ 건축팀장 $\qquad$ $\qquad$ 건축팀 $\qquad$ $\qquad$ <br> 제22조(간사 및 서기) (1)(현행과 같음) <br> (2)--- 건축팀장이 $\qquad$ <br> -----(삭제) $\qquad$ <br> 제23조(조정의 신청 및 회의)(1) $\qquad$ $\qquad$ <br> 1항 $\qquad$ $\qquad$ <br> (2)(현행과 같음) <br> (3)(현행과 같음) <br> (4)(현행과 같음) |


| 현 행 | 개 정 |
| :---: | :---: |
| 제25조(비용부담) (1)위원장은 조정신 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 관에 감정•진단•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. <br> (2)법 제 76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는 다음 각호의 뫄 같다. 다만, 조 정위원회의 위원, 관련공무원의 출 석,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. (개정99. 7. 30) <br> 1. 감정•진단•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소요되는 비용 <br> 2. 검사•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<br> 3. 당사자의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 인 출석•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<br> (3)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 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및 법 제76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 터 1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 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 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 | 제25조(비용부담) (1)(현행과 같음) <br> (2) 법 제76조의 16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1. (현행과 같음) <br> 2. 검사-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<br> 3. (현행과 같음) <br> (3)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16 ---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법 제76조의 10 <br> -- 법 제76조의7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|


| 헌 행 | 개 | 정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제4장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| 〈삭제〉 |  |
| 제30조（건축물의 용도제한）도지사가 | 〈삭제〉 |  |
| 지정 공고한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 | 〈삭제〉 |  |
| 축물을 건축（수평증축을 포함한다 하 |  |  |
| 는 경우에는 침수위（침수위가 결정되 |  |  |
| 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표면 |  |  |
| 으로부터 지상 3미터 부분을 말한 |  |  |
| 다）이하 부분을 거실용도의 목적으로 |  |  |
| 건축하거나 거실 용도로 사용하여서 |  |  |
| 는 아니된다． |  |  |
| 제31조（건축물의 구조제한）（1）제11종 |  |  |
| 및 제2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|  |  |
|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|  |  |
| 로 하여야 한다． |  |  |
| 1．철근콘크리트•철골철근콘크리트． |  |  |
| 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|  |  |
| 2．보강콘크리트블록ㄱㅈㅗ 등 구조기 |  |  |
| 술사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도 |  |  |
| 지사 또는 시장•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|  |  |
| （2）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|  |  |
|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구조로 |  |  |
| 하여야 한다． |  |  |
| 1．제1종 및 제 2종 재해관리구역안 |  |  |
| 에서 허용하는 구조 |  |  |
| 2．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|  |  |
| 제32조（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| 〈삭제〉 |  |
|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당해 재해 |  |  |
| 관리구역안에 위치하는 건축물이 재 |  |  |
| 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|  |  |
| 제70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|  |  |
| 건축물의 철거•개축•수선•용도변경 |  |  |
| 사용금지•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|  |  |
| 명할 수 있다． |  |  |


| 현 행 | 개 정 |
| :---: | :---: |
| 제 33 조（건축기준의 완화）재해관리구 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，법 제 48 조 ，법 제 5 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 용되는 건축기준을 100 분의 13 하 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． <br> 〈신설〉 | 〈삭제〉 <br> 제 35 조（건축허가 등의 수수료）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（변경을 포함한다）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「건축법」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의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． |

(별표1)
건축허가 등 수수료(제35조 관련)

| 연면적의 합계 | 수 수 료 |
| :--- | :--- |
| 3 만 $m^{2}$ 이상 10 만 $m^{2}$ 미만 | 40만원 |
| 10 만 $m^{2}$ 이상 30 만 $m^{2}$ 미만 | 80만원 |
| 30 만 $m^{2}$ 이상 | 160 만원 |
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
# 관계법령 발추 

## $\square$ 건축법

제54조(재해관리구역) 삭제<개정 2005. 12. 7, 시헹일 2006. 6. 8>

제 76 조의 6 (조정등의신청) (1)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 76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2)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 인 이상이 하며,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. 다만, 건축분쟁조 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 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(3)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 일 이내에,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 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5.11.8]

제 76 조의 7 (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) (1)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.
(2)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 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둥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(3)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•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둥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

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[전문개정 2005.11.8]

제 76 조의 10 (조정의 효력) (1)조정위원회는 제 76 조의 9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(2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(3)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,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(4)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 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05.11.8]

제76조의 16 (비용부담) (1)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•진단•시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 를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.
(2)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 치하게 할 수 있다.
(3)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 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•도의 조 례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5.11.8]삭제<개정 2005. 12. 7, 시행일 2006. 6. 8>

